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7. 9 선고 2019가단65168(본소), 2021가단54147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 ·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1나81608(본소), 2021나81615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7. 9 선고 2019가단65168 판결

전 문

- 원고(반소피고) 1. A
2. 망 B의 소송수계인 C
3. 망 B의 소송수계인 D
4. 망 B의 소송수계인 E
5. 망 B의 소송수계인 F
6. 망 B의 소송수계인 G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

담당변호사 주상진

피고(반소원고) H

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박종대

변 론 종 결 2021. 4. 9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들은 피고(반소원고)에게,
가. 평택시 I 전 499㎡ 중, 별지 감정도 표시 14, 15, 16, 17, 18, 5, 19, 20, 21, 9, 10, 11, 12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303㎡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, 같은 감정도 표시 22, 23, 24, 26, 7, 8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M부분 53㎡ 지상 (가)부분 분묘를 철거하며, 나. 평택시 I 전 499㎡를 인도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, 평택시 I 전 499㎡ 중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 A에게 2분의 1 지분, 원고 C에게 22분의 3 지분, 원고 D, E, F, G에게 각 2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2. 3. 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) .

반소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평택시 I 전 49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는, 1963. 1. 22.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1980. 6. 23. 피고의 아버지인 L 앞으로 1973. 10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, 2000. 11. 16.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평택시 M 전 492평에 관하여는 1972. 3. 3.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, 같은 날 망 B, 원고 A 앞으로 같은 해 2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M 전 492평 사이에는 지적도상 O 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황으로는 도로의 흔적이 없다.

라. 피고는 2019. 2. 28.경 경계복원측량 결과 자신이 이 사건 토지로 알고 경작하던 토지가 평택시 P 임야 5,653㎡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

마. 원고 A, 망 B 및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, 별지 감정도 표시 14, 15, 16, 17, 18, 5, 19, 20, 21, 9, 10, 11, 12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03㎡ 지상에 수목(이하 ‘이 사건 수목’이라 한다)을 식재하고, 같은 감정도 표시 22, 23, 24, 26, 7, 8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M 부분 53㎡ 지상 (M부분에 선친 Q(1984. 5. 15. 사망), R(1980. 12. 24. 사망)의 합장묘(이하 ‘이 사건 분묘’라 한다)를 설치하여,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.

바.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. 3. 9. 사망하였고, 배우자인 원고 C 및 자녀들인 원고 D, E, F, G이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.

2.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주장 요지

가) 원고 A 및 망 B은 1972. 3. 3.경 평택시 M 전 492평을 매수하여 경작하면서 착오로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도 위 매수한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믿고서 함께 점유, 경작하였으므로,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. 3. 3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.

나) 따라서, 피고는 원고 A 및 망 B의 상속인들인 원고 C, D, E, F,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. 3. 3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,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일 1992. 3. 3. 이후인 2000. 11. 1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.

한편 원고들은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의 아들이어서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결국,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,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,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며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장구

1) 원고들 중 망 B의 상속인들은 B이 사망한 후 이 사건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상속지분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를 밝혀 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.